

定 款

한화에어로스페이스株式會社

1977年 7月 22日 制正
1977年 8月 3日 改正
1977年 9月 14日 改正
1978年 11月 16日 改正
1979年 2月 26日 改正
1979年 7月 5日 改正
1980年 2月 15日 改正
1980年 7月 15日 改正
1980年 12月 11日 改正
1983年 2月 15日 改正
1984年 11月 30日 改正
1985年 2月 14日 改正
1986年 4月 1日 改正
1986年 12月 9日 改正
1987年 2月 14日 改正
1988年 2月 29日 改正
1989年 2月 28日 改正
1990年 2月 27日 改正
1991年 2月 28日 改正
1992年 2月 29日 改正
1993年 2月 26日 改正
1994年 2月 28日 改正
1996年 2月 27日 改正
1997年 2月 27日 改正
1998年 3月 23日 改正
1999年 3月 19日 改正
2000年 3月 17日 改正
2001年 3月 9日 改正
2002年 2月 28日 改正
2010年 3月 19日 改正
2011年 3月 18日 改正
2012年 3月 16日 改正
2015年 6月 29日 改正
2016年 3月 25日 改正
2017年 3月 24日 改正
2017年 6月 15日 改正
2018年 4月 1日 改正
2019年 3月 22日 改正
2020年 3月 25日 改正
2023年 3月 28日 改正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WHA AEROSPACE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항공기엔진, 선박 및 산업용 가스-터빈과 동 보조기기류 제작, 정비, 판매, 임대, 서비스업
2. 각종 전기, 전자기기, 광학기기 및 관련기기와 동 부분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직매, 임대, 설치, 보관 및 서비스업
3. 각종 정밀기계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4. 특수목적용기계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5. 금형 제조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
6. 산업용 로보트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7.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
8. 자동차 및 동 부분품 제작, 판매업
9. 리드프레임 및 반도체 소자 제작, 판매업
10. 사진 및 광학용품(사진기, 렌즈, 현미경, 망원경 등) 제조,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11. 자동 제어장치, 자동 자료처리기계 및 동 부분품 제조, 개발, 판매, 설치, 임대, 서비스업
12. 측정, 시험, 항해, 기타정밀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 개발, 판매, 설치, 임대, 서비스업
13. 음향기기, 녹화 재생장치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14. 레이저가공기 및 응용기기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15. 항공운송업 및 항공운수보조 서비스업
16. 우주선, 위성체 및 동 부분품의 제작, 정비, 판매, 임대, 서비스업
17. 특수차량 및 특수목적용 기계제작, 정비, 판매, 임대, 서비스업
1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
19. 자동화설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개발, 판매, 설치, 임대, 서비스업
20. 국내외의 보관창고, 자동창고, 물류시설, 가공센터 및 물류컨설팅의 제조, 판매, 운영, 임대차 및 서비스업
21. 의료용기기 및 동 부분품·소모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2. 산업처리 자동측정, 제어장비 및 동 부분품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3. 전기공사업
24. 정보통신공사업
25. 토목 및 건축공사업
26.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27.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8. 물품매도계약서 발행업
29. 경제성식물의 재배 및 판매업
30. 시설물 유지관리, 주택사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32. 펌프, 압축기, 템 및 밸브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33. 신·재생에너지 사업
34. 교육 서비스업
35. 가정용품 도매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인터넷사업, 서비스업
38. 에너지진단 및 서비스업
39.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40. 자회사 등과 상품 및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1. 기획, 회계,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2.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4.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45.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6. 군수품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수송업
47. 화공품, 염료, 기타 기초화합물 등 유/무기 화학제품류 및 그 원료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48. 군납업
49. 기계, 중기용품 및 화공약품의 판매업
50. 기술용역업(기계부문, 선박부문, 항공/우주부문, 금속부문, 섬유부문, 광업부문, 건설부문, 환경부문, 해양부문, 산업관리부문, 응용이학부문, 전기/전자부문, 통신기기부문, 정보/통신 처리 부문, 자동제어기기부문 등)
5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52. 전투용 차량 제조업
53. 내외국인 또는 내외국법인과 위 각항에 관련되는 투자 또는 합작사업
54.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 3 조(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aerospac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액면가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이익배당우선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3.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4.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3(의결권배제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 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4(전환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 1) 본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본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5.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본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8.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1조 제 1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5(상환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본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본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본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6.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7. 본 회사는 제 7조의 4에 의한 전환주식을 본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본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8.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9.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신주의 인수)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 1항 제 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본 회사는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삭제) (2016. 3. 25)

제 10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 542 조의 3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1.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배당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년도의 초일로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본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삭제) (2019. 3. 22)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결산기말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선택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공고를 한다.
2.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미리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등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4 조(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5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9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6 조(소집 및 통지)

1.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25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총 주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1개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 363 조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4. 삭 제 (2002. 2. 28)
5. 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제 1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고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른다.
2.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언동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9 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 20 조(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 22 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상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23 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7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0조 제 1항을 준용한다.
3.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4.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상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이사회는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의 2(사외이사)

1.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 382 조의 제 3 항 및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부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4 조(이사의 임기)

1.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이사 및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5 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2.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27 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28 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일시를 정하여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0 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업타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2 조(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집행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의 2(감사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2 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2 조의 4(집행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3. 집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5 장 계산

제 34 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일회로 한다.

제 34 조의 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삭제) (2001. 3. 9)

제 36 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영업연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삭제) (2011. 3. 18)
5. (삭제) (2011. 3. 18)
6.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제 37 조(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결산기 중간인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으로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때의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신주의 발행한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 10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 10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제 5 조 (사채의 발행한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제 14조 제 1 항 및 제 15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 14조 제 1 항 및 제 15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제 6 조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 2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 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